

#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명 개정 :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

나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법률명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다.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(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)

라.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6. 12. ~ 7. 2.)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선요구사항(용어정비 등) 반영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있음(추후반영)

-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의견 있었으나, 관내 옥외광고관련 종사자 또는 기금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의 성비 불균형에 따라 추후 반영

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##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명 “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평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
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옥외광고업자”를 “옥외 광고업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 제목 “(기금의 관리·운용)”을 “(기금의 운용 및 관리)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1항 중 “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”를 “세입·세출예산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10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기금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상실한”을 “잃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	<p><u>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6조의2에 따라 <u>광고물 등의 정비</u>를 통해 <u>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</u>하기 위하여 <u>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</u>하고, 그 <u>관리 및 운용</u>에 필요한 사항을 <u>규정</u>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재원) <u>옥외광고정비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<u>옥외광고사업 수익금</u> 중 <u>균에 배분되는 수익금</u></li> <li>2. ~ 6. (생략)</li> <li>7. <u>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</u>한 수익금</li> </ol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<u>정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재원) <u>옥외광고발전기금</u>----- ----- 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</li> <li>2. ~ 6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</p>

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 
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
2. 경관개선
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 
및 지원
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
5.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  
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  
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  
리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 
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  
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  
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 
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 
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
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

-----  
-----.

1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
<삭 제>

3. 옥외광고업자 등-----  
-----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 
사항

5.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 -  
----- 세  
입·세출예산외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 
-----  
----- 옥  
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
-----.

② -----  
- 1명을 포함한 10명 -----  
-----  
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

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·  
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 
을 심의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 
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
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 
해촉할 수 있다.

- 1.·2. (생략)
- 3.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 
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 
상실한 경우
- 4.·5. (생략)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  
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 
통할한다.

- ② (생략)

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에  
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(생략)
-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  
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
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  
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

- 기금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의 위촉해제) -----  
-----  
-----  
위촉해제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 
-----  
없음 -----
- 4.·5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 
-----  
총괄한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 -----  
-- 1명-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  
-----  
---- 범위-----  
-----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

<p>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」을 준용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(시행 2017.7.26.)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6.1.6.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6.>

[전문개정 2011.3.29.]

[제목개정 2016.1.6.]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470